

○ 민주노총 5월 경고파업과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선다

- 민주노총이 20일 (월) 기자회견을 통해 5월 경고파업과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형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을 밝힘.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자본이 긴 세월을 걸쳐 요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고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 규정함.
-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전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재검토, 보완 운운하면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면 폐기가 답”이라며 사업과 투쟁의 수위를 높혀갈 것이라 밝힘.
- 또한 노동시간 개악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가 피해를 입겠지만 특히 피해가 집중될 중소기업, 영세, 5인 미만,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선전과 여론사업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며 반드시 노동시간-임금-고용이 연결된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나서겠다 밝힘.

○ 진행 안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규탄발언 : 사용자에게 넘어간 노동시간 선택권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장시간 압축노동에 위협받는 노동자 건강권 - 공공운수노조 한정희 위원장
- 규탄발언 : 임금삭감을 숨긴 휴게권 -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 질의 & 응답

○ 첨부자료 : 민주노총 투쟁계획

**모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사조장법
윤석열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 3. 20(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 윤석열정부의 입법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기업의 탐욕과 이윤만 보장하며 국제보편적 기준과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노동시간 제도를 독재시대로 후퇴시킨 악법으로서 반드시 폐기해야한다 ■

1.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반인권개악안
2. 사용자에게 노동자 부려먹는 시간 선택권만 무한 확대해주는 자본가 민원 해결법
3.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조장법
4. 휴게시간선택권 명목으로 임금은 덜주고 일만 많이 시키는 임금삭감법
5.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용 감소를 불러오는 고용불안조장법
6. 부분근로자대표제로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노조대표성과 단결을 저해하는 노조파괴법

민주노총 투쟁계획

<1> 노동개약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주요 대중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자본의 탐욕과 이윤추구를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적은 비용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지옥같은 노동으로 내모는 과로사조장법 노동시간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할 짓인가. 이는 만인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60시간 노동은 짧은가? 물타기 꿈수 쓰지 말고 폐기하라! 검토하지 말고 폐기하라!. 노동시간 단축하라.

① “문제는 윤석열이다!”

노동개약,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 3. 25(토) 오후2시30분. 서울 대학로
- 내용 :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요금 내려라, 민생파탄-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 방식 : 가맹 사전대회, 본대회, 행진
- 윤석열 심판! 공동행동의 날(15시30, 000단체)

② 4.19, 생명안전 후퇴 개약 윤석열정권 규탄!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2. 4. 19(수) 오후 1시, 서울도심
- 방식 : 중대재해, 산재사망 노동자 상여 행진,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정권 규탄 시민선전.행진

③ 5.1(노동절) 윤석열정권 심판! 노동자 총궐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 5. 1(월) 오후2시(가), 서울 및 14개 시도 주요 도심
- 참가 : 서울대회5만, 전국20만 조합원
- 4월, 윤석열정권 1년 진단평가 각계각층 토론

④ 5월말,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안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경고파업

- 일시 및 장소 : 2023. 5월말, 서울(충청이북) 및 주요도심(충청이남)
- 내용 : 정부개악안 폐기, 노조법 개정 촉구

※ 윤석열정부 취임 1년 투쟁

- 5.10(수) 윤석열 심판! 시국행동의 날(시국선언 및 공동행동), 각계각층 민중진영 및 시민사회
- (가)5.20(토), 윤석열 심판 범국민대회, 양대노총 결의대회 (추진중)

〈2〉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안 폐기를 위한 여론사업

- 정부의 노동개악안 폐기투쟁 발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3. 3. 20(월) 오전 11시, 민주노총
- 양대노총 기자회견(추진중)
 - ▲ 3.30(목), 대규모 기자회견 및 행진, 노동개악안 폐기 의견서 전달
-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 대시민선전 및 버스킹
 - ▲ 3.22(수) 11시30~13시 광화문 버스킹(청계천 한빛광장)
 - ▲ 3.28(화) 11시30~13시 정동길
- 전국 수요선전

〈3〉 노동개악안 폐기 입법예고기간 대응 사업(~4.17)

- 대중적인 의견개진 운동
 - ▲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온라인 서명운동 : 조합원 및 시민
 - ▲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팩스, 이메일, 문자 보내기 운동
- 각계각층 대중조직, 시민사회, 법률단체 의견 발표 및 기자회견
 - ▲ 1차> 2023. 3.30(가) 과로사 조장, 노동자건강권 훼손하는 노동시간개악 반대 토론회
 - ▲ 2차> 2023. 4. 6(가) 노동시간 개악안은 청년의 삶을 파괴한다. 정부개악안 반대 청년토론회
 - ▲ 3차> 2023. 4. 10(가) 학계 및 법조계 노동시간 개악 문제점 토론회(또는 의견 발표 기자간담회)
- 민주노총위원장, 노동부장관(대통령) TV토론회 (추진)

〈4〉 노동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 고소고발

□“노동시간 개악안을 추진하여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대통령, 노동부장관을 형법 255조에 의거하여 고발한다”

- ▲죄명 : 1) 살인의 예비·음모죄(일명 과로사조장죄) 2)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4) 행복추구권 침해

※윤석열대통령, 노동부장관의 죄명

1. 살인의 예비·음모죄(일명 과로사조장죄)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임.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당 연장근로를 69(80.5)시간 이상, 18주 연속 64시간을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임.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은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임. 살인의 예비는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행위 이외의 준비행위로서 아직 살인행위를 시작하기 전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준비행위를 말함. 살인음모는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행위로서 2인 이상의 사람 사이의 합의를 말함. 윤석열과 이정식이 장시간의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준비하기로 합의한 것이 음모이고,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은 예비로 볼 수 있음.

2.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사람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함. 즉,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기간 노동을 시킴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스스로 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을 내몰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임.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라고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라고 한 바 있다. 즉, 인간을 경제발전, 사용자의 이익창출 등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 그런데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으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4.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복추구권의 내용에는 휴식권이 포함됨(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주 69(80.5)시간이나 64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임.